

화재예방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원예술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각종시설물의 화재예방 및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 유지, 운용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교직원, 학생 및 본교를 출입하는 방문객에게 적용된다.

제2장 방화관리의 책임

제3조(방화관리 조직) 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본부에 방화관리책임자와 방화관리자를 두며, 각 학부(과), 처, 부속기관에 방화 정·부 책임자를 두고 각 실에는 소화기책임자를 둔다.

② 각 부서 방화책임자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하며, 부책임자는 각 부서의 과장 및 팀장으로 한다.<개정 2007.3.15>

제4조(임무분담) 본교의 방화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무를 분담한다.

1. 방화책임자

가. 담당구역내의 화재위험을 도출하여 방화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나. 각 실 소화기책임자를 임명하고, 자위소방대 활동에 협조한다.

2. 방화부책임자

가. 방화책임자를 보좌하고,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나. 각 실 소화기책임자를 감독한다.

3. 방화관리책임자

가. 본교 소방계획을 작성 총장의 재가를 받아 관할 소방서에 제출한다.

나. 본교 소방계획에 의한 소방훈련을 실시한다.

다. 기타 방화관리상 필요한 임무를 수행한다.

4. 소화기책임자

가. 담당구역 내에 비치된 각종 소화기를 관리한다.

나. 초기 진화활동에 적극 임한다.

다. 각 실의 위험물 사용 및 화기취급에 철저를 기한다.

5. 경비원

가. 순찰시 경비구역 내의 화재 또는 화재위험 요소를 발견하여 신속히 본부 당직자에게 보고한다.

나. 화재경보가 발령되면 인원 및 차량을 화재경보 해제시까지 출입통제 한다.

제5조(자체검사 및 점검) 방화관리책임자는 자체검사반을 편성하여 연 2회 이상 위험물 보안검사를 실시하며, 위험물취급자로 하여금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위험물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한다.

제3장 자위소방대 및 출동조

제6조(자위소방대 편성) 자위소방대는 전 교직원으로 편성하며, 자위소방대장은 총장이 되고, 유고시에 는 경기드림지원실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08.05.>

제7조(편제 및 임무) 자위소방대의 편제 및 임무는 [별표1] 과 같다.

제8조(출동조 편성) 출동조는 경기드림지원실 소속의 전 직원과 방화관리자로 편성한다. 출동조장은 경기 드림지원실 경기드림지원팀장으로 하고, 부재 시에는 방화관리자가 그 임무를 대행한다.<개정 2007.3.15.> <개정 2020.08.05.>

제9조(출동조 임무) 출동조는 본교 내의 화재발생시 초기 진화작업을 위하여 즉각 출동하며, 소화장비를

항상 완전한 가동상태로 정비 유지해야 한다.

제4장 비상연락체계

제10조(비상연락 및 소집) 근무시간 중에 발생한 화재는 전화, 싸이렌, 확성기로 전교직원에게 통보하며, 휴일 및 야간의 화재발생시 행정본부 당직자는 즉시 자위소방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 비상연락망에 의거 자위소방대원을 소집한다.

제11조(화재신고) 화재발생을 목격한 최초 발견자는 즉각 관할 소방서에 신고함과 동시에 자위소방대장에게 화재발생시간, 화재신고시간, 소방차도착시간, 화재상황 등을 보고한다.

제5장 소방훈련

제12조(소방훈련실시) 유사시 피해를 최소한으로 경감시키기 위하여 출동조는 매월 1회, 자위소방대원은 연 2회 이상 소방종합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소방훈련 참가의무) 전교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방훈련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6장 전기시설안전관리

제14조(업무조직)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지휘명령계통과 연락계통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집행할 조직 구성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경기드림지원실장은 안전관리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는 경기드림지원실에 소속한다.<개정 2020.08.05.>
2. 전기안전관리담당자는 법령 및 이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업무를 정확히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한다.
3. 안전관리업무를 분장과 관계된 지휘계통의 직명은 본교 사무분장규정에 의한다.

제15조(설치자 의무) ① 전기설비에 관한 안전관리상 중요한 사항을 결정 또는 실시하려고 할 때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관계기관이 법령에 의거 행하는 검사에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수검에 임하여야 한다.

제16조(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의무) 전기안전관리담당자는 법령 및 이 규정을 준수하고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종사자의 의무)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전기안전관리담당자 부재시의 조치) ①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재할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할 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대행자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 부재 시에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를 성실하게 행하여야 한다.

제19조(안전관리 교육) 전기안전관리담당자는 전기시설의 공사, 유지 또는 운용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지식과 기능에 대한 교육을 계획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관리에 관한 훈련)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적어도 연1회 이상 실지 지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공사실시) ①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실시에 있어서는 본교의 업무활동 등과 조정을 기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기설비에 관한 공사실시에 있어서는 필요에 따라 작업책임자를 선임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③ 전기설비에 관한 공사를 타인에 청부할 경우에는 항상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완성하였을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검사하여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고 인수하여야 한다.

④ 공사실시에 있어서는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따로 정한 작업지도서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⑤ 작업지도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정하여야 한다.

1. 휴전범위와 시간, 작업용 기구 등 준비상황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확인
2. 작업시간, 정전시간 및 위험구역의 표시
3. 정전 중 차단기, 개폐기의 오조작 방지 조치
4. 작업책임자의 지명과 책임
5. 작업종료시의 위험 및 측정

제22조(순시, 점검, 측정 등) ①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를 위한 순회, 점검 및 측정은 일일 점검과 관계기관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 및 요청검사와 따로 정한 순시지도서에 의하여 행한다.

② 순시점검지도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순시경로
2. 순시 중의 점검 개소 및 점검사항
3. 순시 점검의 주기

③ 순시 점검 또는 측정 결과, 법령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해 전기설비를 수리, 개조, 이설 또는 그 사용을 일시정지 혹은 제한하는 등 조치를 강구하여 항상 기준에 적합토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사고의 재발 방지) 사고 기타 이상시에는 필요에 따라 임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 방지에 유감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운전과 조작) 전기설비의 운전과 조작기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정한 제 법규에 따른다.

1. 평시 또는 사고 기타 이상시에 있어서 전기설비의 운전 또는 조작을 요하는 기기의 조작순서 및 운전방법과 명령계통 및 연락계통
2. 전기설비의 경미한 사고를 수리,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등의 응급조치와 보고 또는 연락 요령
3. 전력회사의 변전소 또는 영업소와의 연락사항
4. 긴급 시에 연락하여야 할 사항, 연락선 및 연락방법의 게시

제25조(방재체제) ① 태풍, 홍수, 화재, 기타 비상재해에 대비하여 전기설비에 관한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재의식을 전 교직원 및 고용원에게 철저히 주지시킴과 동시에 응급자재를 비축하여 재해발생시의 조치에 관한 본 교내의 체제를 정비하고, 본교와 관계기관과의 협력체제 및 연락체제를 정비하여 두어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담당자는 비상재해 발생시에 전기설비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책무를 행한다.

③ 전기안전관리담당자는 재해 등의 발생으로 위험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당해 범위의 송전을 정지할 수 있다.

제26조(기록) ①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기록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보수공사 기록
2. 순시, 점검, 측정기록(일상 순시점검, 정기 정밀점검)
3. 운전일지(일상 순시점검, 고장, 경사고 포함)
4. 전기 사고 기록(고장, 경사고, 중대사고보고서)

② 주요 전기 기기의 보수 기록은 보수공사보고서 [별지 제1호 서식] 에 기록하고, 필요한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7조(책임한계)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전기설비와 안전상의 책임 한계점은 재산상의 책임 한계점과 일치하여야 하며, 분기 전주의 부하측으로 한다.

제28조(구내 수용설비) 구내 수용설비의 배치는 수용설비배치도(별도 1)와 같다.

제29조(위험표지) 수전실 기타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로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사람의 주의를 환

기도록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측정기구류의 정비) 전기설비의 안전상 필요한 측정기구류는 항상 정비하여 경기드림지원실에 적정히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0.08.05.>

제31조(설계도면 및 서류의 정비) 전기설비에 관한 설계도, 시방서, 취급설명서 등에 대하여는 영구 정비 보존하여야 한다.

제32조(수속서류 등의 정비) 관계 관청, 전기사업자 등에 제출한 서류 및 도면, 기타 주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그 사본을 경기드림지원실에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0.08.05.>

부 칙(2000. 3. 2)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각종 안전관리규정법 및 동 시행령에 준한다.

부 칙(2001. 1.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0. 6)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3. 15)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2.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8. 5)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자위소방대 편제 및 임무]

자위소방대 편제 및 임무

구 분	조 편 성	임 무	구 성 인 원
지휘반	지 휘 조	지휘 및 지휘 보좌	
출동반	출 동 조	초기 진화작업, 대형화재 확산 방지	
경보반	통 보 조	소방기관 통보 책임 및 확인	
	연 락 조	교내 화재발생 통보	
소화반	소 화 조	소방설비 조작으로 진화 활동	
	급 수 조	수원의 보존 및 운반	
피 난 유도반	유 도 조	피난자 유도	
	구 조 조	부상자 구조 및 질식사 검색	
	방 화 조	비화 경계 및 반출 물건 경비	
방 호 조치반	공 작 조	방화문 개폐 및 소방활동시 장애물 제거	
	반 출 조	중요서류 및 물건 비상 반출	
의료반	의 료 조	부상자 응급처치	
	후 송 조	부상자 후송	